도민이 중심 신뢰받는 의회

제42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
(제2차 교육위원회)
2024. 10. 11.(금) 10:00

검 토 보 고 서

충청북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사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교 육 위 원 회
수 석 전 문 위 원

충청북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사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: 충청북도교육감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○ 제출일자: 2024년 10월 2일

○ 회부일자: 2024년 10월 2일

3. 제안이유

○ 「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」 개정 사항 반영

○ 직속기관 등의 사용대상자를 확대하여 휴양시설의 활성화 도모

○ 각 기관의 설립 목적과 취지에 맞는 운영을 위하여 조례 개정

4. 주요내용

□ 타 조례 개정 사항 반영

❍ 사용료 징수 기관 변경 사항 반영(안 제6조제2항)

- 「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」 2020. 11. 6.자 개정 반영
- 충청북도교육문화원(삭제) → 충청북도학생수련원(신설)

□ 직속기관 사용 대상자의 사용료 관련 조항 개정(안 별표3, 별표4의2, 별표4)

❍ 직속기관의 사용료 징수금액 변경 및 사용 대상자 명문화

- (해양교육원, 학생수련원) 생활실(관) 학생 1,000원 → 무료
- 교직원 범위에 퇴직 교직원(퇴직 교직원 가족 포함)을 추가하여 사용료를 현직 교직원과 동일하게 변경(기타에 규정한 퇴직 교직원은 삭제)

❑ **기관·시설의 표기명 현행화(안 별표4의2. 안 별표4의3)**

❍ **기관·시설 표기명을 별표 사용구분 및 현행 조례에 따라 현행화**

- 해양교육원(제주) → 해양교육원(제주분원)
- 강당 → 다목적실, 세미나실로 분류

5. 검토의견

가. 조례 제안 이유

❍ 본 개정 조례안은 「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」 개정에 따른 사항을 현행화하고, 사용료 변경 및 사용 대상자 확대 등을 통하여 학생 및 교직원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「지방자치법」 제47조에 따라 도의회의 의견을 얻고자 하는 것임

나. 주요 내용에 대한 검토

❍ 주요 내용으로는 소관 기관 변경 1건, 사용료 변경 1건, 사용 대상자 확대 1건, 일부 미비 사항 변경 3건 임

❍ 안 제4조는 충청북도학생수련원 및 충청북도해양교육원 학생 생활관 사용료 1천원을 무료로 개정한 것으로,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조치며 학생 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됨

❍ 안 제6조제2항은 「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」 개정에 따라 사용료 징수 기관을 변경한 것이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

❍ 안 제1조부터 제3조제2항, 제4조제2항, 제8조제2항, 제10조, 제11조는

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과 「법령 입안 및 심사기준」 등에 맞추어 용어를 정비한 것으로 입법 체계나 형식에 있어서도 타당성이 인정됨

다. 종합 검토 의견

○ 본 개정 조례안은 관련 조례 개정에 따른 입법 조치, 학생 및 교직원의 복지 증진 등에 대한 사항으로 조례 개정 취지 및 필요성, 타당성이 인정되며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

○ 다만, 「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」가 2020. 11.에 개정되어 학생수영장의 관할 기관이 변경되었음에도 4년이 지난 시점에 개정안으로 제출된 바, 사업 부서에서는 상위법령, 관련 조례 개정에 대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입법 조치를 통하여 교육정책 및 사업 운영이 필요함

○ 또한, 제천학생회관 실외 수영장은 2020년 제천교육지원청과 제천학생회관 상호 이전 재배치로 2019년부터 미운영되고, 제천교육지원청 청사 증축에 따라 2025. 1.부터 철거 예정임에도 본 조례 개정안에는 관련 내용이 반영되지 않아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